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의미와 영향

허 인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ihuh@kiep.go.kr, Tel: 3460-1183)
한바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부연구위원 (brhan@kiep.go.kr, Tel: 3460-1110)
윤서영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전문연구원 (syyun@kiep.go.kr, Tel: 3460-1040)

차 례 ● ● ●

1. 배경
2. 대이란 경제제재의 변천과정
3. 대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관련 사항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내용 ● ● ●

- ▶ 2011년 11월 이란 핵 활동에 대한 IAEA(세계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EU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함.
- ▶ 경제제재는 제재국이 피제재국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통상적인 무역 또는 금융 관계를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줄이기를 위협”하는 외교 정책으로 최근 제재국은 삼각제재(국제공조)를 통해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고 함.
 - 삼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제재국이 단기적 피해를 감수하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및 제3국 기업을 적극 처벌해야 이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또 피제재국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 이란 제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양자제재에서 삼자제재로의 확장, 삼자제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 조성 및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온 것을 엿볼 수 있음.
 -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한 국제공조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2010년 이후 미국이 제재 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임.
- ▶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이란 석유, 비석유제품 거래제재에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EU의 금융제재 실시로 원유수입에 대한 (재)보험이 불가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 우리 정부는 이란 제재로 인한 에너지 공급차질 발생 시 이라크, 오만 등과 대체공급 협의를 마친 상태임.
 - 이란산 원유가 다른 지역 원유로 대체되고, 2012년 이란산 원유와 다른 국가의 원유 간 가격차이가 전년과 동일하고 수입량도 같다면, 원유수입액은 약 3억 달러(2011년간 원유수입액의 0.3%) 증가할 것임.
- ▶ 2010년 4/4분기 이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원화결제통해서 대이란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원유수입이 중단되어 수출대금 처리에 어려움 있을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37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됨.
- ▶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도입유가 상승보다는 수출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유 수입 및 수출대금 결제수단의 확보, 대체 수출지역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1. 배경

■ 2011년 11월 이란 핵 활동에 대한 IAEA(세계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EU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함.

- IAEA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을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IAEA가 요구하는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대이란 결의안을 채택함.
- 미국은 행정명령 13590호(2011. 11. 21)를 발표, 이란의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2012. 12. 31)을 통해 외국 민간은행과 이란 중앙은행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 중앙은행의 대이란 석유매매 금융거래를 금지함.
- EU는 2012년 1월 23일 각료이사회결정(2012/35/CFSP)을 채택하면서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구매·운송 및 이에 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및 (재)보험을 금지함.

■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제재의 적용 범위에 관해 미국 및 EU와 활발히 협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이란 거래 담당은행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정부소유·지배 은행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석유제품 거래에 관한 미국의 제재는 적용받지 않게 됨.
- 또한 석유제품 거래에 관한 제재는 6월 예외국가 적용을 받아 제재에서 면제됨.
- 한편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때 대부분 EU 회원국의 (재)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바, EU의 제재조치를 둘러싸고 양측 간 논의를 진행해옴.
 - EU 회원국이 선박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대이란 원유수입은 불가능함.

■ 미국과 EU 등의 제재로 인해 한국과 이란의 경제 관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글에서는 대이란 경제제재의 진화과정과 현재 쟁점,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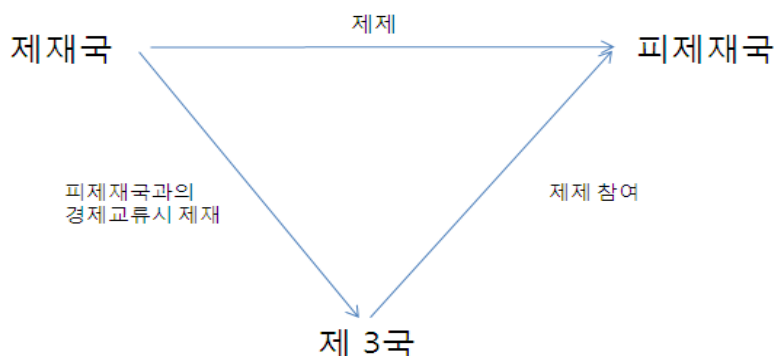
- 이란은 풍부한 원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 중 9.4%(6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 교역대상 국가임.
- 또한 이란은 UAE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중동 내 최대 수출대상국이며(2011년 기준 60.7억 달러, 18.5%) 7천만 명이 넘는 인구 대국으로서 향후 유망 수출시장으로 꼽힘.

2. 대이란 경제제재의 변천과정

가. 경제제재의 정의 및 구조

- 경제제재는 제재국이 피제재국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통상적인 무역 또는 금융 관계를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줄이기를 위협”하는(Hufbauer, Schott and Elliott 1990, p. 1) 오래된 외교 정책임.
 - 일반적으로 △ 인권, 테러리즘, 핵 확산 등의 이슈에서 대상 국가의 정책 변경(예: 2010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 대상국의 정권 약화(예: 1960년 피델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대쿠바 제재) △ 대상국의 무력행위 저지 혹은 무력역량 약화(예: 1982년 영국의 아르헨티나 제재) 등을 위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3회의 경제제재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최다 제재국은 미국이 120회로 압도적이며 구소련/러시아(16회), 영국(8회), 프랑스(8회) 순임. 국제기구인 EC/EU(27회)와 UN(22회)도 경제 제재를 사용한 바 있음.
 - 최다 피제재국으로는 구소련(7회), 인도(5회)이고,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페루, 터키, 이란이 각각 4회를 기록함.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제재국과 피제재국 간 양자적 관계이나 제3국의 공조 없이 제재국이 피제재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어려움.
 - 예를 들어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을 대상으로 경제제재를 펼쳤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지원하여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렸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역시 2005년 전까지는 EU, 2005년부터는 중국으로 인해 이란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다는 평가임.
- 이처럼 제3국의 공조가 제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최근 제재국이 피제재국과 제3국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삼자구조 제재를 활용하고 있음.

그림 1. 삼자구조의 제재



- 예를 들어 제3국과 피제재국(원대상국)이 특정 분야에서 일정액 이상의 경제교류를 가질 경우 제재국이 제3국과의 교역 혹은 금융관계를 단절하는 것임.
- 대표적인 삼자구조 경제제재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인 Helms-Burton Act(1996),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법(1996)¹⁾을 들 수 있음.

■ 삼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국 제재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거나 제재국이 단기적 피해를 감수하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및 제3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이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또 피제재국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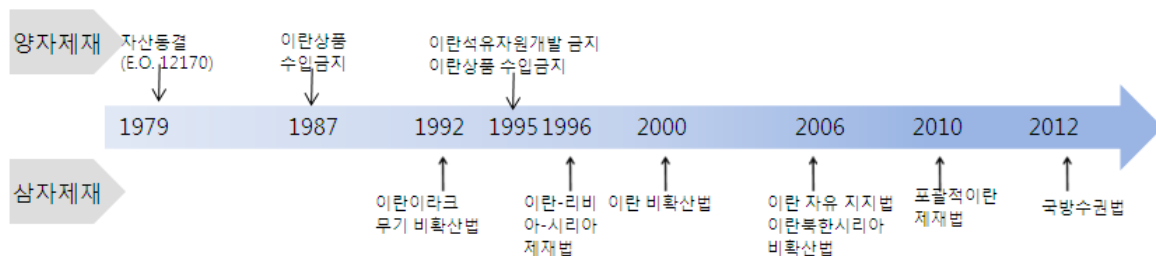
- 삼각제재의 문제점은 1)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재국 측에서 본국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3국을 제재할 유인이 낮고, 2) 제3국과 피제재국 측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제재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임.
- 1996년 미국의 대쿠바 제재 이후 오히려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제3국과 쿠바의 교역량이 예상교역량보다 커져 오히려 미국의 교역을 제3국의 기업이 대체한 바 있음(Hufbauer *et al.*, 1997).

나. 대이란 경제제재의 진화

■ 이란 제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양자제재에서 삼자제재로의 확장, 삼자제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합의 조성 및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온 것을 엿볼 수 있음.

- 1979년 이란 내 반미 정권 집권과 미 대사관 인질사건 및 1980-88년의 이란-이라크 전쟁 등을 계기로 미국은 이란에 무역, 투자, 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양자제재를 가함.
- 미국은 △ 이란 해외자산 동결(1979) △ 이란으로부터 수입 금지(1987) △ 미국 기업의 이란 내 석유개발 참여 금지(1995. 3) △ 이란으로 특정 물품 수출 및 투자 제한(1995. 5) △ 이란과의 모든 교역과 투자 금지(1997)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음.

그림 2.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역사



1) 2004년 이후 이란제재법으로 변경됨.

2) 한바란(2012), *Theory of Economic Sanctions*(2012 출판 예정 보고서, KIEP).

- 이와 함께 미국은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제3국의 대이란 무기 매매와 기술 교류(1992년 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를 제재하고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3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이란제재법을 입법하는 등 삼자제재를 도입함.
- o 1996년의 이란제재법은 1995년 11월 이란이 자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를 개방하면서 경제가 부흥하여 핵 활동과 테러 단체 지원이 활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0년 도입된 「포괄적 이란제재법 (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2010)」의 전신임.
- 하지만 이란 제1의 교역권이었던 EU는 1997년 이란제재법이 미 국내법의 해외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WTO 제소를 위협하였고, 미국은 EU와의 교역분쟁을 막기 위해 1998년 이란제재법의 예외조항을 도입하게 됨.
- o 예외조항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 법의 적용을 보류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important)’ 하다고 인증하거나, 이미 이란에 경제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³⁾
- 즉, 미국은 제3국의 협조를 강제하기 위해 삼자제재를 도입하였지만 결국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피해가 예상되자 제재 시행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란제재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o 199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란제재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실제 네덜란드의 쉘(1999년, 8억 달러, 2007년 43억 달러), 이탈리아의 ENI(2000년 19억 달러, 2001년 10억 달러), 프랑스의 토탈(1999년 10억 달러), 노르웨이 Statoil(2002년 26억 5천만 달러), 일본의 Inpex(2004년 2억 달러), GS건설(2002년 16억 달러), 대림건설(2007년 3억 2천만 달러, 2009년 20억 달러) 등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제약 없이 이루어졌음.

■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가 활발해지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미국이 2010년 이후 제재 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임.

- 2005년 서방국가와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자 UN 안보리결의안 1737호(2006. 12), 1747호(2007. 3), 1803호(2008. 3), 1929호(2010. 6)를 통해 이란의 핵 활동과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이 고조됨.
- 이에 미국은 2011년 말 이란제재법의 만료(expiration) 시점에 맞추어 기존 법보다 한층 강화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키며(2010년 7월) 이번 제재를 강력 시행할 것을 알림.
- o 실제 2011년 5월 제3국 기업 7개사⁴⁾와 2012년 1월 제3국 기업 3개사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게 됨.
- 이에 따라 EU, 일본, 한국,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 등이 독자적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며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동참함.
- o 또한 프랑스의 토탈, 이탈리아의 ENI, 일본의 INPEX 등이 이란 에너지 부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에 약속함.

3) 결국 EU는 WTO에 미국을 제소하지 않았고 미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1998년 첫 제재위반 프로젝트라고 결정된 프랑스 토탈사와 러시아가즈프롬,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사가 이란 정부와 맺은 South Pars 가스전 개발에 대한 20억 달러 계약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시켜줌.

4)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International(PCCI) of Bailiwick of Jersey and Iran, Royal Oyster Group(UAE), Tanker Pacific(Singapore, affiliated with Ofer Brothers Group), Allvale Maritime(Subsidiary of Ofer Brothers Group, a Europe-based trust), Societe Anonyme Monegasque Et Aerienne(SAMAMA, Monaco, but affiliated with Ofer Brothers Group), Speedy Ship(UAE/Iran), Associated Shipbroking(Monaco), and Petroleos de Venezuela, of Venezuela).

3. 대이란 제재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관련 사항

가. 주요 제재 내용

■ 2011년 11월 이란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EU는 행정명령 13590호, 「국방수권법」, 각료이사회 결정(2012/35/CFSP) 등을 통해 대이란 제재수위를 강화하였고, 각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해왔으며, EU는 제3국과 EU 국적 기업이 이란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현재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과 EU의 주요 제재 항목은 △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허가제 도입(미) △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 제한(미) △ 대이란 정유제품 생산 및 대이란 정유제품 수출입을 돕는 행위 제재(미) △ 외국 중앙은행의 대이란 석유매매 금융거래 금지(미) △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구매·운송 및 이에 관한 (재)보험 금지(EU) 등임.

1) 대이란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허가제

-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한 미국 내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⁵⁾ 개설 혹은 유지를 금지함(규칙 제정 공고(Notice of Rulemaking), 2011. 11. 28).
- 또한 제3국 은행과 이란 중앙은행의 비석유제품 거래 제재
- EU는 비제재대상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4만 유로 이상) 및 사전신고제(1만 유로 이상)를 적용함(2010. 10).
- 2012년 3월 16일 벨기에에 근거를 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fers)는 EU의 자산동결 대상에 대한 SWIFT의 거래를 중단함.
- 우리나라 역시 비제재대상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4만 유로 이상) 및 사전신고제(1만 유로 이상)를 적용하고 있음(2011. 1 시행).

2) 이란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기술지원 제한

- 미국은 이란제재법(1996), 포괄적 이란제재법으로 이란 에너지 부문 개발에 대한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제재함⁶⁾
- 제재조치로 ① 미 수출입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

5)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미국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수령, 외국금융기관을 대리해 지급하거나 외국금융기관을 위한 여타 금융거래 수행(KOTRA 2010. 8).

6) 개별 건 5백만 달러 이상으로 12개월 합계가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천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달러 및 정부기금 보관자(repository)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중 3개 이상을 부과
- 또한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된 건별 100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총합 500만 달러 이상의 상품·서비스·기술·지원을 제재(행정명령 13590호).
 - EU는 석유·가스 산업(정제, LNG, 탐사, 생산) 관련 이란 내 EU 기업, 이란 국적의 기업, 해외 이란 기업에 대한 핵심기술 및 장비의 판매, 공급, 이전을 금지(Council Decision 2010/413/CFSP).
 - 우리나라는 석유자원 개발 관련 △ 201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기여하는 투자행위 △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⁷⁾

3) 이란의 정유 생산 및 수출입 능력 지원행위 제한

- 미국은 포괄적 이란제재법으로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행위, 대이란 정유제품 수출, 이란의 정유제품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행위를 제재함.
- 또한 이란 국내 석유화학 제품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는 행위를 제재함(행정명령 13590호).
 - 제재 대상은 이란의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유지 및 확대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건별 25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총합 100만 달러 이상의 상품·서비스·기술·지원을 하는 개인 및 기관임.⁸⁾

표 1. 최근 미국의 대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추이

	이란제재법(1996년)	포괄적 이란제재법(2010년)	행정명령 13590호(2011년)
제재 대상	① 이란 석유자원 개발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WMD·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①~②에 다음을 추가 ③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하여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①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에 100만 달러(12개월 내 총 500만 달러) 이상의 물품·서비스·기술 등을 제공한 경우 ② 이란의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유지·확대에 25만 달러(12개월 내 총 1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한 경우
제재 조치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 수출입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전문 달러 및 정부기금 리포지터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①~⑥에 다음을 추가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①~⑤ 중 어떤 것(any)도 부과할 수 있음. ⑥~⑨를 필요에 의해 부과

자료: US Library of Congress; H.R. 2194 원문, E.O. 13590 백악관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 한편 EU의 정제부문 관련 조치에는 이란 기업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장비의 판매, 공급, 이전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⁹⁾

7) 개별 건 5백만 달러 이상으로 12개월 합계가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도 포함.

8) 이란의 국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유지 및 확대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건별 25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총합 100만 달러 이상의 상품·서비스·기술·지원을 하는 개인 및 기관

9) 「Council Decision of 26 July 20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0. 7. 27).

4) 제3국 중앙은행의 대이란 석유매매 금융거래 금지(미, 「국방수권법」)

- 이란과의 석유(제품)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정부 소유 혹은 통제하의(owned or controled) 외국 금융기관(중앙은행 포함)은 제재의 대상이 됨.
- 상기 제재대상은 미국에서 대리계좌 혹은 결제계좌의 개설 및 유지가 금지되며, 입법 후 180일 이후부터 제재가 부과됨.
- o 단, 입법 후 60일 간격으로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의회에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량 및 가격을 보고해야 하며, 이 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이 상당히(significantly) 줄었다고 미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한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5) 대이란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구매·운송 및 이에 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및 (재)보험 금지(EU, Council Decision 2012/35/CFSP)

-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2012년 1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건이나 보조계약에 대해서는 7월 1일까지 이행 가능하며, 석유화학제품은 5월 1일까지 이행 가능함.
- 이와 함께 이란인 소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투자와 주요 장비, 기술의 판매·공급 금지

나. 우리나라 관련 제재 내용

- 미 「국방수권법」의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민간은행의 대이란 비석유제품 거래에 관한 제재(상기 ①)는, 대이란 거래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정부 소유·지배 은행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재를 받지 않게 됨.
- 미국이 2월 14일 발표한 「국방수권법」 가이던스에는 ‘해외정부 소유·지배’가 정부 지분 50% 이상을 의미한다는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 65%, 우리은행은 우리지주(예보 지분 57%) 100% 소유임.
- o 2010년 미국의 「포괄적 대이란제재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은행, 우리은행만이 원화계좌 운영을 통해 대이란 거래를 담당해 옴.
- 4)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예외국가 적용을 받음으로써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라 미국의 제재에서 면제됨.
- 우리나라의 2012년 1/4분기 대이란 원유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3%(1,773만 배럴) 감소하여, 예외국가 적용을 받음.
- o 이 법안을 발의한 미 커크-메넨데즈 의원은 ‘상당한 감축’의 정의에 대해 18% 구매 감축이라고 미 재무부에 제시한 바 있음(2012. 2. 2).
- o 일본도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약 20% 감축(약 70만 배럴)하여 지난 3월 20일 예외적용을 받음.
- 한편 5)와 관련하여 한·EU 양측 간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대이란 원유수입 중단 가능성이 높음.

- 원유수입 시 선박 및 원유에 대한 보험과 사고배상책임 보험이 요구되며, 우리나라는 대이란 원유수입 시 대부분 EU 회원국의 (재)보험사에 의존하고 있음.
- 이번 EU의 제재조치는 EU 국적 기업들의 이란산 원유 수송에 대한 보험을 금지하고 있는바, 향후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임.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1년 우리나라와 이란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60억 7천만 달러와 11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중 각각 1.1%, 1.2%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수입 중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은 9.4%로 도입국가 중 6위 규모임.
- 이란으로부터의 수입 중 89억 9천만 달러(79.2%)는 원유수입액임.

표 2. 우리나라의 원유 도입 현황

국가	2011년			2010년		
	물량(천B)	순 위	비중(%)	물량(천B)	순 위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302,987	1	32.7	286,312	1	32.8
쿠웨이트	129,706	2	14.0	112,604	3	12.9
카타르	93,095	3	10.1	64,362	5	7.4
이라크	89,709	4	9.7	59,956	6	6.9
UAE	87,234	5	9.4	105,656	2	12.1
이란	87,184	6	9.4	72,605	4	8.3
러시아	32,971	7	3.6	50,160	7	5.8
인도네시아	21,008	8	2.3	29,668	9	3.4
오만	16,715	9	1.8	12,152	11	1.4
전 체	926,723	-	100	68,684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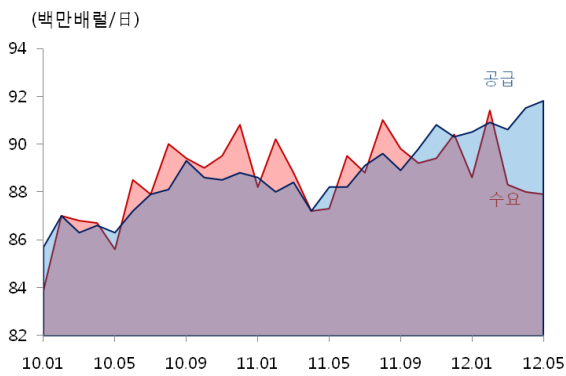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고(2012. 3. 16).

- 우리나라와 이란은 오랜 기간 경제관계를 지속해온바, 이번 제재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 관계가 단절될 우려도 있음.
- 이란은 중동지역 중에서 비교적 석유 수출 이외의 산업적 기반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관계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가. 국내 원유 수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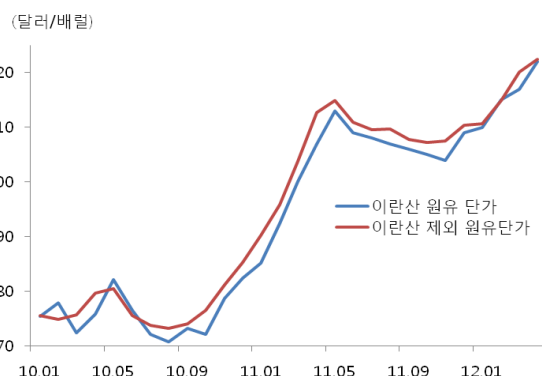
- 유럽의 금융제재에 따른 이란으로부터 원유도입 차질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현재 이라크, 오만 등과 대체공급 협의를 마친 상태임.
 - 2012년 1월에 오만 국왕과 비상시 원유공급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3월에는 이라크와 협의를 마침.¹⁰⁾
 - 이라크와 협의하여 비상시 일일 25만 배럴의 원유공급을 약속받음.
 - 특히 최근 세계경기 둔화로 원유수급 상황이 개선되어 이라크, 오만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도입규모를 고려할 때 이라크와 오만으로부터의 도입량이 이란으로부터의 도입량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세계 원유 수요와 공급 추이



자료: Bloomberg, Energy Intelligence Group.

그림 4. 국내 도입 원유 단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 이란산 원유 가격이 다른 지역의 원유 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란산 원유가 다른 지역의 원유로 대체된다면 도입단가가 상승해 2011년 도입량 기준으로 볼 때 원유수입액은 약 3억 달러(2011년간 원유수입액의 0.3%) 증가할 것임.
 -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1년 평균 이란산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103.20달러였으며, 이란산 원유를 제외한 원유 도입단가는 106.64달러로 이란산 원유가 다른 지역의 원유에 비해 배럴당 3.44달러 저렴했음.
 - 따라서 이란 원유 공급이 다른 지역 원유로 고르게 대체된다면, 원유수입액이 988억 달러로 실제(985억 달러) 보다 3억 달러만큼 컸을 것임.
 - 이란산 원유를 다른 지역의 원유로 대체할 경우 도입단가는 배럴당 0.33달러 비싸지게 되며 이는 원화환율이 1,150원이라면 리터당 2.4원의 비용상승을 의미함.
 - 한편 대체 공급국가로 언급된 이라크와 오만산 원유 도입가격은 각각 배럴당 104.02달러, 101.31달러로 이란산 원유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아, 이들 국가로 대체된다면 추가 원유수입액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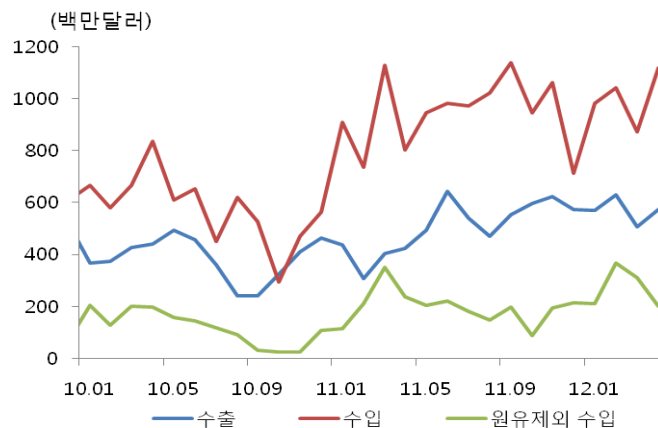
10)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2. 1. 15),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 3. 16) 참고.

- 다만 대이란 제재로 인해 중동지역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원유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어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국제에너지청(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Oil Market Report(6월)에 따르면 현재 원유시장의 공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름철 석유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공급초과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분석함.
-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이란의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한 바 있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나. 대이란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010년 4/4분기 이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원화결제를 통해 대이란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달러, 유로, 엔화 등 국제통화를 활용해 무역이 이뤄지지만, 국제통화 보유국들이 대이란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 이 제재에서 면제를 받은 우리나라 은행을 통한 원화계좌를 활용해 무역결제를 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이란으로부터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이란의 수출결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대이란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

- 만약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어 대이란 수입이 수출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출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대이란 수입(113억 6천만 달러) 중 원유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전체의 20.7%인 23억 6천만 달러였으며, 수출은 60억 7천만 달러로 원유수입을 제외하면 37억 1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 2011년 연간으로 볼 때 원화계좌를 통한 수출대금 결제 중 약 61%는 수입원유대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수출대금 결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대이란 수출 관련 무역금융이 중단되어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원화결제 실시 이후 대이란 무역적자(54억 달러)를 감안하면 연말까지의 수출대금 결제는 충분한 상황임.
- 따라서 2011년 대이란 무역자료를 기초로 할 때, 대이란 경제제재가 고착화되면 최대 약 4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감소가 예상됨.
- 201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원유수입을 다른 나라의 원유로 대체할 경우 3억 달러의 수입액이 증가하고, 대이란 수출이 원유수입 중단으로 대금결제 문제에 봉착하면 최대 약 37억 달러의 수출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대이란 수출이 대금결제 문제로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대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수출결제 차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최대 37억 달러임.
 - 2011년도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300억 7천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약 13%의 규모임.
-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도입유가 상승보다는 수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금 결제수단의 확보, 대체 수출지역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 한국무역협회(KITA)는 대이란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결제 계좌 자율관리조치를 발표하고, 2011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원화결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대이란 수출 보험제공을 지속할지에 대해 논의 중임.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란을 대체할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KIEP**